

[양식 제20호]

사	산	신	고	서
(년		월	일)

※ 신고서 작성 시 아래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, 선택항목에는 '영표(○)'로 표시하기 바랍니다.

(년	철	_	台)	L T	07 11	- 0717(/	<i>))</i>	717. 10	1/ 1 -1	H-1-1.
① 피역	인지자	(태야	})								
2	성명	한글 ((성) / (명)	한>	사 (성) / (명		주민등록	·번호		_	
인지자	등록기준지	·									
③ 모	성 명	한글	(성) / (명)	한	자 (성) / (명	<u> </u>	주민등록	·번호		_	
	등록기준지			·	·						
④ 사	산일자			년	월		일				
⑤ 태· 신	아인지 고 일			년	월		일				
6 7)1	 라사항										
7	성 명				① <u>또</u>	는 서명	주민등록	번호		-	
신 고	자 격	11부	2早3	3]동거히	-는친족 [4]유언	집행자 [기타	(자격:)
인	주 소					전화		6	메일		
⑧ 제출	·인 성 명					주민등	등록번호			_	

작 성 방 법

- ※ 본 신고는 인지된 태아가 사산한 경우에 출생신고의무자 또는 유언집행자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지신고지의 시(구)·읍·면의 장에게 하는 신고입니다.
- ⑥란: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.
- ⑦란:신고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(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)를 기재합니다.
- ⑧란:제출인(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)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.[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]

첨 부 서 류

- 1. 의사 또는 조산사의 검안서(인지된 태아가 사체로 분만된 경우) 1부.
- ※ 아래 2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.
- 2. 태아인지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.
- 3. 신분확인[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]
 -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: 신분증명서
 -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: 제출인의 신분증명서
 - 우편제출의 경우 :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
- ※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3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.
- **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,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